

제288회 임시회  
2010. 3. 23(화)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3. 23.  
행정소방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3월 2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10년 3월 3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2010. 3. 16.)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강길중)

###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2010. 1. 1)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 도세 세목을 추가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며, 지방세법 개정 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재산보유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시설세의 세율 인하를 2009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 로 적용하였으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여 세율인하를 통한 세부 담 완화가 금년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도세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 (신설, 제3조제2항제4호)

- 지방소비세 납입확인 규정 신설 (신설, 제52조의2)
  -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은 경우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확인 후 이의제기 및 정정요구토록 함.
-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합에 따른 용어 개정 (안 제77조, 제78조제1항제3호, 제79조제 )
  - “주민세균등할” ⇒ “주민세 균등분”으로 개정
-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적용시한 1년 연장 (부칙 개정)
  - 조례 제3172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 개정
  -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 ⇒ 2009년도 및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개정 ※ 적용시한 1년 연장

###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장용대)

#### 가. 도세 조례 개정배경 및 추진과정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법(2010.1.1) 개정에 따라 시·도세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음.

##### ▶ 도세 조례 개정 추진과정

- 행정안전부 도세 조례 표준안을 시도 통보(2010.1.5)
- 행정안전부 ‘10년도 목적세율 인하 조례개정 표준안 시도통보 (2010.1.18)

충청북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도세 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도세 조례를 검토·확정하여 금번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임.

#### 나. 주요개정내용

##### □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도세 세목체계 개편

개정된 지방세법(2010.1.1)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 지방소비세를 도세로 편입시키고 처리절차를 규정함.

- 도세 보통세의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추가하고

-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처리 하던 것을 지방소비세에 한하여 도지사가 직접처리토록 하며,
- 지방소비세의 납입확인을 도지사가 매월 확인, 정정요구토록 함.

□ 목적세인 공동시설세율 인하를 1년 연장하여 세부담 완화

- 현행,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공동시설세율을 과세표준액 구간별로 각각 0.01%P인하한 공동시설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줄였음.
- 지방세법 개정(2009.2.6)으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함에 따라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증가하여
- 공동시설세 세율을 과세표준액 구간별로 각각 0.01%P인하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충북도 도세 조례를 개정하여 2009년도에 공동시설세 세율인하를 시행함.
-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공동시설세 세율인하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과세기준일(6.1)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하여 조례에서 '09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세율인하를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지방소득세 신설(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합)에 따른 용어 정비

-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 균등할”로 변경

#### 다. 종합의견

금번 개정안은 지방세법에서 신설된 지방소비세를 도세 세목으로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무처리를 도지사가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현행 시행중인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 적용시한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년을 연장하는 등 도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세 세목체계의 정비와 재산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내용은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이견이 없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 결과 : 원안의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4
----------	-----

제출연월일 : 2010년 3월 2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지방세법 개정(2010. 1. 1)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 도세 세목을 추가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재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시설세의 세율 인하를 2009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여 세율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가 금년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도세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 (신설, 제3조제2항제4호)
- 지방소비세 납입확인 규정 신설 (신설, 제52조의2)
  -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경우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확인 후 이의제기 및 정정요구토록 함
-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합에 따른 용어 개정 (안 제77조, 제78조제1항제3호, 제79조제2항)
  - 주민세균등할⇒주민세 균등분으로 개정

-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적용시한 1년 연장 (부칙 개정)
  - 조례 제3171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 개정
  -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 ⇒ 2009년도 및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개정 ※적용시한 1년 연장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지방소비세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직접 처리한다.

제2장에 제4절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절 지방소비세

제52조의2(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도지사는 매월 법 제159조의7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7조 중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란 중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충청북도 조례 제3171호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분 지방소비세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 (생략)</p> <p>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득세</li> <li>2. 등록세</li> <li>3. 면허세</li> <li>4. &lt;신설&gt;</li> </ol> <p>제10조(부과·징수의 위임) ①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lt;단서 신설&gt;</p> <p>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지방소비세</p> <p>제52조의2 &lt;신설&gt;</p>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p> <p>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득세</li> <li>2. 등록세</li> <li>3. 면허세</li> <li>4. 지방소비세</li> </ol> <p>제10조(부과·징수의 위임) ①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u>다만,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직접 처리한다.</u></p> <p>②(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지방소비세</p> <p>제52조의2(지방소비세 납입확인)</p> <p>① <u>도지사는 매월 법 제159조의7 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② <u>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u></p>

제77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법 제1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승용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u>주민세 균등할</u> 의 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시에 있어서는

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7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법 제1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승용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u>주민세 균등분</u> 의 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3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4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5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100분의 25로 한다.
3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4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5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제79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생략)

② 시장(군수)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 · 재산세 ·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충청북도 조례 제3171호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적용시한) 제5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9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생략)

② 시장(군수)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 · 재산세 ·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충청북도 조례 제3171호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적용시한) 제5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세법

**제5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10.1.1>

1. 취득세
2. 등록세
3. 레저세
4. 면허세
5. 주민세
- 5의2. 지방소득세
- 5의3. 지방소비세

**제159조의7(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각 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59조의6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40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의 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50만 이하의 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7	삭제	

##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제59조(과세표준과 세율)**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4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2